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3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세액감면 대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 추가(황정아의원안)	3

I. 개요

1.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3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황정아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8. 7.
- (3) 회 부 일 : 2025. 8.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 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액감면 대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주체 추가(황정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2) ○ 대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 <신 설> ○ 세액감면: 3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u>2025. 12. 31.</u>	○ 감면대상 입주기업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 포함 ○ 대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술육성주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0. 12. 31.</u> ○ 시행일: 2026. 1. 1.

현 행	개정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술육성주체부터 적용

* 황정아의원안 2025. 8. 7. 발의(의안번호 12030)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¹⁾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할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국공립연구기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등록한 첨단기술기업²⁾ 및 연구소기업³⁾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개시 기준 3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후 2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음.

개정안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외에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반면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는 연구개발특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것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의 사

2) 특구 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3)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하여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업화 및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특례 제도임.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할 것, ②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③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④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기업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구 안에서 설립된 기업임.⁴⁾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

반면,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③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④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⁵⁾, 국가전략기술 육성주체는 연구개

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특구에 입주할 필요가 없음.

둘째, 현행법 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 기술육성주체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조세특례 부여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동일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범위를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주항공·해양 등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

-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② 이차전지, ③ 첨단 모빌리티, ④ 차세대 원자력, ⑤ 첨단 바이오, ⑥ 우주항공·해양, ⑦ 수소, ⑧ 사이버보안, ⑨ 인공지능, ⑩ 차세대 통신, ⑪ 첨단로봇·제조, ⑫ 양자

* 음영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과 유사한 분야임

-
2.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 의 처

02)6788-5154
